

위성통신 이용 편의 향상과 전파 혼신 예방을 위한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 기술기준 개정 Q & A



국립전파연구원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Q 기술기준* 개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 제6조제2호

무선국 허가·신고 절차가 면제되는 지구국이
전파혼신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구국 단말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KC전파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을 통해 **전파혼신을 방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기술기준을 개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위성통신 서비스 활성화와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무선국 허가·신고 대상이었던
지구국 중 일부가 허가제도로 전환되도록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25.4.1.)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제 지구국에 적합하게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또는 무선설비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지구국. 다만,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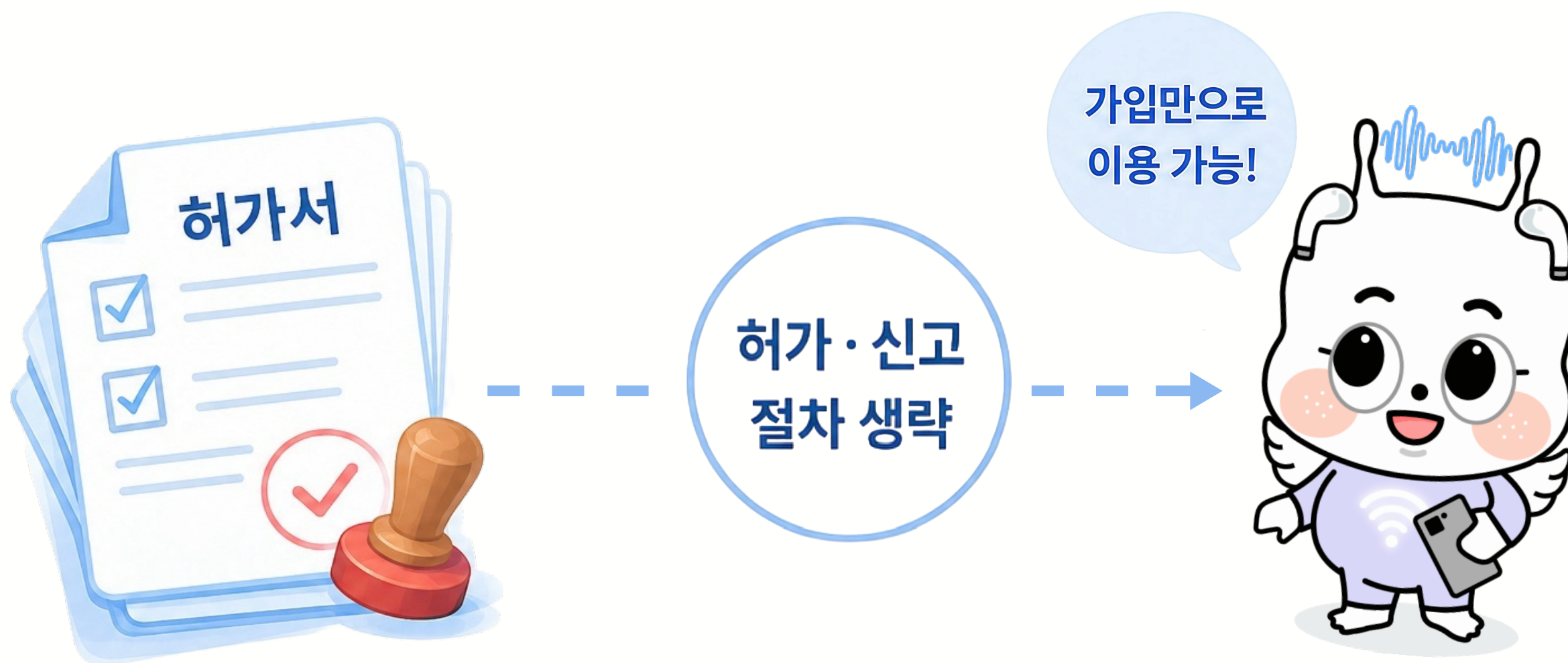
가. 국내에 설치된 다른 무선국(제29조 제1항 제30호부터
제3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협정에 따라 외국위성을 이용하는 무선설비



Q 허가외제 무선국(지구국)이 무엇인가요?

허가외제 무선국이란 **허가받은 것으로도 보는 무선국**으로,
휴대전화와 같이 별도의 무선국 허가 · 신고 절차 없이
가입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국을 의미합니다.



Q 개정된 기술기준의 주요내용을 알려주세요.

기존 기술기준은 무선국 허가에 의한 운용 및
준공 검사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어 이용자 단말(지구국)의
적합성평가 체계 관점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국제표준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수용하여
지구국 공통 조건 재편 허가제 지구국 세부기준,
적합성평가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구국 공통조건 재편)

지구국의 일반적 사항 규정 , 일부 조문 이동 및 용어 명확화 등 국내 및 국제표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제6조제2호가목) 위성추적, 송신제어, 고장검출 기능 등 지구국이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 등을 규정

(허가의제 지구국 세부 기준 마련)

전파혼신 방지를 위해 국제표준 등을 수용하여 전파발사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제2호사목) 허가의제 전환 지구국의 송·수신 장치 조건(출력,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불요발사 부차적 전파발사 제한 등) 규정

(적합성평가 대상 추가)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와 시험기관 지정 시험항목 명칭 변경을 위한 다른 고시를 동시에 개정하였습니다.

(부칙)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된 지구국 이용자 및 사업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과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시점을 규정한 적용례를 부칙으로 명시

Q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지구국의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아야하나요?



과거 허가·신고된 지구국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경과 규정과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시점을 규정한 적용례를 부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 기존에 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 되었던
무선국기자재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서비스 및 운용하고 있던 허가의제로
전환된 지구국 기자재의 경우, 사업자(제조사 등) 및 이용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지구국 기자재 목록은
[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지구국 기자재를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된 양식을 작성하여,
전파시험 인증센터 담당자 이메일(rra2014@korea.kr)로 접수해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향후 확인서를 관세청에 제시하여 통관 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8.28> (국립전파연구원사이트(rra2014.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 적합성평가확인 신청(확인)서
[] 사전통관

필수번호	필수일지	제1기입	제2기
① 유선신청번호	② 유선승인번호	③ 유선번호	
④ 유선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명 칭 제 주소	정원번호 제고번호 (후)	
⑤ 유선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명 칭 제 주소	정원번호 제고번호 (후)	
⑥ 유선 ⑦ 기자재명칭 (기재명칭) ⑧ 유선명 ⑨ 유선명 ⑩ 유선명 ⑪ 유선명 ⑫ 유선명	중간승인번호 (승인번호) 중간승인번호 (승인번호) 중간승인번호 (승인번호) 중간승인번호 (승인번호)	금 액 승 수 명	
유선명	중간승인번호 (승인번호)	제고국가	

제 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적합성평가
사실 확인 또는 시험신청을 위한 사전통관 제공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인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귀하가 신청한 제 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적합성평가 사실 확인 또는 시험신청을 위한 사전통관 제공일을 확인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장 **확인**

홍지사항

1. 제1호제1항을 공표한 이후에 신청신청을 하여 사전통관을 확인받은 기자재는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전통관 후 기자재는 중간 승인과 승인으로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에는 중간 승인과 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4.8.28(제1호서식) (제1호서식)

적합성평가확인 신청(확인)서

□ 「전파법 시행령」 제21조 하가의제 지구국 기자재 적합성평가확인 신청 양식

화 인 서

※담당자 및 연락처

1. 기자재 개요
가. 허가에게 식별번호:
나. 제조사/제조국 :
다. 모델명 :
라. 수 량 :
마. 외관도(사진, 도면 등 현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가. 수입(제조) 목적 :
나. 사용(설치) 장소 :

제당 기자재는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를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부칙<제2026- 1호,
2027. 7. XX>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기자재임을 확인합니다.

20 . . .
“회사 명관 또는 서명, 직인 등”

수입자 확인서

양식은 [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이번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편익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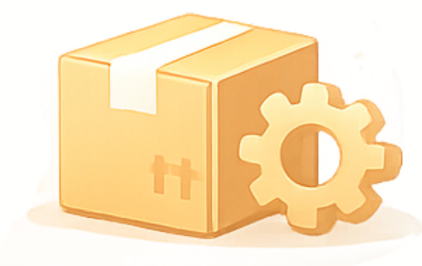
국민(이용자)

기존 무선국 허가 및 신고 절차 없이 통신서비스 가입만으로 지구국 단말을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통신 사업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조 및 수입 업체

적합성평가를 통해 제조, 수입, 판매 등에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